

## 안양시 지하수 조례

제정 2005. 8. 1. 조례 제1953호  
전부개정 2007. 6. 21. 조례 제2059호  
일부개정 2008. 11. 10. 조례 제2127호  
전부개정 2011. 7. 6. 조례 제2332호  
일부개정 2015. 4. 24. 조례 제2627호  
일부개정 2017. 10. 17. 조례 제2881호  
일부개정 2019. 10. 28. 조례 제3122호(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 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9. 12. 31. 조례 제3168호  
일부개정 2023. 12. 29. 조례 제3609호  
일부개정 2025. 11. 13. 조례 제3814호(안양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4. 24., 2017. 10. 17., 2023.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4. 24.>

1. “지하수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에게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 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 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5. 4. 24.]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

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의 출수장치 및 적산유량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전문개정 2017. 10. 17.]

제4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시장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4., 2019. 12. 31., 2023. 12. 29.>

1. 삭제 <2023. 12. 29.>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측정망”으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3. 전시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사용하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제5조(지하수관리위원회) 시장은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안양시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양시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 또는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단서신설 2019. 12. 31.>

1. 시의회 의원

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전문가

3.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안건이 있는 경우 구성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이 끝나면 해산한다. <단서삭제 2019. 10. 28., 개정 2023. 12. 29.>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4., 2023. 12. 29.>

1. 위원이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회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3. 12. 29.]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회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회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회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회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제9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4. 24.>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 4. 24.>

제9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존·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관리·운영)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는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15. 4. 24.>

제1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 4. 24.>

1. 법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차입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
5.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
6.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제1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3.>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2. 제4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3. 그 밖에 시장이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비용

제14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0. 17., 2025. 11. 13.>

1. 법 제30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분기별 또는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 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3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며, 부과금액 중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15. 4. 24., 2017. 10. 17.>
- ④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 이용량 및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4개월의 월평균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직전 4개월의 월평균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1일 양수능력에 이용일을 곱하여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지하수 개발·이용자로 하여금 고장난 계량기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7.>

제15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감면) ① 시장은 공익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4. 24.>

1. 국가 또는 국가에서 위탁관리하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경우: 전액면제
2.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또는 시에서 위탁관리하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경우: 전액면제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국가,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월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50퍼센트 감면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감면금액이 연간 1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감면자, 감면금액, 감면사유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4.>

- ②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기는 상하수도요금과 같게 하고, 상하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신설 2015. 4. 24.>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방법을 따로 정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4. 24.>

- ④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징수 할 경우 상하수도요금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신설 2015. 4. 24.>

제16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 ①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을 납부일로 본다.

-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시장과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 ④ 시장은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3항의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4. 24.]

제17조(가산금)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

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30조의3제6항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9. 12. 31., 2025. 11. 13.>

제18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액 조정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과오납금의 환급 등) ①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으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그 과오납 금액을 부담금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지체 없이 납부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환급 시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제20조(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 ①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지하수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제1항에 따라 계측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계측기는 시장에게 봉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것
2. 검정유효기간이 넘지 아니한 것
3. 파손되거나 고장나지 아니한 것

③ 시장은 지하수개발·이용자가 설치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인검정기관에 기능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정에 필요한 비용은 지하수개발·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지하수개발·이용자는 계측기의 점검 또는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삭제 <2019. 12. 31.>

제22조 삭제 <2019. 12. 31.>

제23조 삭제 <2019. 12. 31.>

제24조 삭제 <2019. 12. 31.>

제25조 삭제 <2019. 12. 31.>

제26조 삭제 <2019. 12. 31.>

제27조(준용) ① 삭제 <2019. 12. 31.>

②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신설 2017. 10. 17.>

제2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19. 12. 31.]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  
다. <개정 2015. 4. 24.>

[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19. 12. 31.]

부칙 <2011. 7. 6. 조례 제2332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4. 24. 조례 제2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0. 17. 조례 제28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28. 조례 제3122호,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  
을 적용한다.

부칙 <2019. 12. 31. 조례 제3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9. 조례 제3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11. 13. 조례 제3814호, 안양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  
규 등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9. 12. 31.>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9. 12. 31.>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9. 12. 31.>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9. 12. 31.>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9. 12. 31.>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9. 12. 31.>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19. 12. 31.>